

의안번호	제 8 호
의 결 연 월 일	2018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8년 8월 28일

충청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8

제출연월일 : 2018년 8월 28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아동복지법」 제4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충청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기관 종료('18.10.1.)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충청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충청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 위탁기간 :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5년간
- 위탁기관 : 아동복지법 제45조 제4항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

※ 現 위탁기관 :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15.11.16.~ '18.10.1.)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위탁 주요사무
 -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아동 상담·조사를 위한 진술녹화실 설치·운영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 자체사례회의 운영 및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설치·운영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아동학대예방과 관련된 업무

3. 참고사항

가. 現 충청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현황

- 위탁기관 :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대표 조성천)
-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 202번길 66-1
- 규 모 : 부지 323.4㎡, 건축 1059.72㎡(지하 1, 지상 5층)
- 위탁기간 : '15. 11. 16. ~ '18. 10. 1.
- 사 업 비 : 746,270천원(기금50%, 도비50%)
- 직원현황 : 22명(관장1, 상담원19, 임상심리사1, 사무원1)
- 운영경과
 -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에 지정('00.09.25.~'15.11.15.)
 -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에 위탁('15.11.16.~'18.10.01.)

나. 관계법령 : 별첨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아동복지전담기관의 설치)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충청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충청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추진계획

충청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18.10.1)됨에 따라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위탁기관 5년, 사회복지사업법·아동복지법 등 -

□ 관련규정

- 「사회복지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아동복지전담기관의 설치)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 위탁개요

- 사업위치 : 청주시 청원구 읍봉로 202번길 66-1
 - 규 모 : 부지 323.4m², 건축 1059.72m²(지하1, 지상5층) ※ 도유재산
 - 위탁기간 : '18. 10. 2. ~ '23. 10. 1.
 - 관할구역 : 4개시·군(청주, 증평, 진천, 음성)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사 업 비 : 746,270천원(기금50%, 도비50%) ※ 연도별 변동
 - 위탁사무
 -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아동 상담·조사를 위한 진술녹화실 설치·운영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 자체사례회의 운영 및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설치·운영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아동학대예방과 관련된 업무
- ※ 現 위탁기관/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대표 조성천, 위탁기간('15.11.16.~ '18. 10. 1.)

□ 추진계획

① 의회동의 : '18. 9월 정례회기중

- 근거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3항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3항>

- ④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② 위탁공고 : '18. 9월중

- 공고방법 : 도 홈페이지 공고
- 선정방법 :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사·결정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부포함)를 둔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
 -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 운영 취소 내지 해지 처분을 받거나 법인 또는 법령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법인은 제외

<아동복지법 제45조 제4항>

- ④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3년이상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 실적이 있을 것
 - 2. 별표8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을 갖춘 것
 - 3. 별표10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을 갖춘 것
 - 4.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

○ 위탁조건

- 관계법령·조례·지침 등을 준수하고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의 고용승계 의무이행
-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
 - ※ 보조금 이외의 추가 필요예산 자부담

③ 수탁기관 선정(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개최시기 : '18. 9~10월
- 구성인원 : 6~9명(관계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
 - 구성방법 : 심의대상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
 - 위원임기 : 수탁기관 선정과 동시에 자동해산
 - ※ 당연직 3명(기획관리실장, 행정국장, 보건복지국장), 기타(전문가) 위촉
- 심사항목
 - 재정적 능력(20점) : 법인의 자산보유현황, 부채현황 등
 - 공신력(20점) : 법인의 설립목적, 업무관련성, 아동학대예방 업무실적 등
 - 사업수행능력(4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재정확보 계획의 적정성 등
 -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20점) : 유관기관과의 협력구축 등
- 결정방법 :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70점 이상)

④ 협약체결 및 공증

- 체결시기 : '18. 10월
- 내 용 : 협약체결 및 협약 내용 공증, 업무 인수·인계

□ 향후계획

-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 '18. 9월
- 민간위탁 공고 : '18. 9월
-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 '18. 9~10월
- 협약체결 및 공증 : '18. 10월

붙임 관련지침 및 조례 발췌 1부.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 ③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4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①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3년 이상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2. 별표 8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을 갖춘 것
3. 별표 10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을 갖춘 것
4. 법 제4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내의 아동 수, 이미 지정받은 법인의 소재지 및 그 법인과 지리적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별표 8]

[별표 8]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제42조 관련)

1. 설치기준

가. 사무실

긴급전화 설치에 필요한 적정 규모를 확보하여야 하며, 아동학대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상담실

- 1)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상담 내용이 드러나지 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2) 효과적인 상담을 위하여 녹취기, 무인카메라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심리검사·치료실

- 1)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아동의 심리치료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2) 놀이치료·미술치료·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3) 가족에 대한 상담·치료·교육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그 밖의 시설

16.5제곱미터 이상의 자료실 또는 대기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

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긴급전화의 운영과 법 제46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1명,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명 및 상담원 6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별표 7 제2호에 따른 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상담원을 겸할 수 있다.

나. 학대받은 아동의 신고·접수, 긴급 출동 등 아동학대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원 등 필요 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별표 10]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제43조 관련)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3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7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이 표에서 "대학등"이라 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중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서 개설·운영하는 별표 18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표 18의 교육과목 중 일부 과목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이수과목에 대한 교육을 면제한다.
 -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 나. 대학등에서 심리학과(복지심리학과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은 임상심리사 자격이 있거나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등 피해아동의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약칭: 공유재산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아동복지전담기관의 설치) ①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법 제45조제2항 및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가정위탁지원센터를 각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시·군별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시·군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복지전담기관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도지사는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업무주관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위탁사무와 관련있는 분야의 관계전문가를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주관 실·과·소장이 된다.